

2022학년도 제2학기 학사운영 방안

- 2022.08.18, 교무처 -

1. 관련

- 가.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-8115(2022.08.04.) ‘2022학년도 2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 안내’
- 나. 학사운영팀(서울)-430(2022.04.19.) ‘2022학년도 제1학기 중간고사 이후 학사운영 방안 상신’

2. 수립 배경

- 정부의 대학 학사운영 방안을 고려하여 온전한 교육활동 지속 및 대학 학사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2022학년도 제2학기 학사운영 방안 수립

3. 주요 운영방안

구 분	주 요 내 용
시행일자	2022.09.01.(목) ~
수업 운영방식	대면수업
비대면수업	원격수업으로 사전 승인된 교과목(e/b/s-러닝)
고사원칙	대면고사 원칙
성적평가	학업성적 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성적평가 시행 - 상대평가를 원칙으로, 교과목 특성/수강인원 등에 따라 상대평가Ⅰ, 상대평가Ⅱ 또는 상대평가 예외로 구분하여 시행
수업 중 방역관리	마스크 필수 착용, 수업중 대화 자제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
일괄보강주간 운영	공휴일에 따른 일괄 보강주간(15주차) 시행
비상 대응계획 (BCP) 적용(1주간)	1단계: 중대본 발표 또는 전체 구성원의 5% 확진 시 전면 융합수업 전환 2단계: 중대본 발표 또는 전체 구성원의 10% 확진 시 전면 비대면수업 전환 ※ BCP 적용기준 비율(5% 또는 10%)은 보건건강관리센터(총무회계팀)로 신고된 매 1주간의 누적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함.
비 고	BCP 1단계 인한 융합수업 시 강의실 수용인원의 50% 이내 조편성 시행

※ 학사운영 방안은 교육부 지침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.

※ 학사운영 방안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칙, 학사에 관한 규정, 각종 시행세칙 및 별도 지침에 따름.

4. 세부 운영방안

가. 대면수업

- 교·강사는 강의시간표에 편성된 해당 주차/요일/교시에, 해당 강의(실습)실에서,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 사전 예고한 교과목 개요/목표/교재/성적평가방법/주차별 수업계획 등에 따라 **대면으로 강의를 진행**하여야 함.

나. 비대면수업

- 원격수업으로 사전에 승인된 e/b/s-러닝 중 온라인시간으로 편성한 교시에 한함.

다. 출결

- 교·강사는 스마트출결시스템을 통하여 블루투스 또는 호명방식으로, 해당 수업시간에 실시간으로 출결사항을 입력하여, 수강생이 출결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 출결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업일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출결사항을 입력하여야 함.

라. 중간/기말고사

- 모든 고사(중간/기말고사 등)는 오프라인(대면) 평가로, 해당 수업일자/요일/교시/강의실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- 고사를 시행하지 않는 교시는 정상수업을 진행하여야 함.
- 원격수업(e/b/s-러닝)에 대한 고사(중간/기말고사 등)는 오프라인(대면) 평가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생과 협의하여 시험일을 지정하여야 함.

마. 성적평가

- 상대평가를 원칙으로, 교과목 특성/수강인원 등에 따라 상대평가 I, 상대평가 II 또는 상대평가 예외로 구분하여 시행함.

바. 공휴일 일괄 휴보강

- 공휴일에 따른 휴강은 교무처에서 보강주간에 해당 보강일자를 일괄 지정함.
- 보강 및 자율학습주간에는 공휴일에 따른 일괄보강 또는 개인사정 등에 따라 사전 승인된 보강만 진행하며, 기타 수업은 미시행하여야 함.

사. 수업 관련 방역 관리

- 방역수칙(손소독, 실내 마스크착용, 강의실 1일 3회 이상 환기, 백신접종 적극 참여 등)은 계속 준수
- 자가검사 활성화: 의심증상 발생 시 자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즉각적 대처 및 확산 방지 필요
- 신속항원검사 시행: 자가검사키트 검사 양성 시 의료기관 시행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판정시 의료기관 및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준수

5. 코로나19 확진시 수업운영

구 분	본인 확진	동거인 확진
교강사	비대면수업 또는 휴보강시행 - 검체채취일 기준 7일	신속항원검사 시행 - 음성인 경우 출강
학생	공결(결석계) 신청(증빙문자첨부) - 검체채취일 기준 7일	신속항원검사 시행 - 음성인 경우 등교

- 학생 확진시 스마트출결시스템의 공결(결석계)을 신청하여 출석인정(7일)을 받도록 하며,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교·강사는 비대면수업, 학습자료 제공, 과제부여 등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교·강사 판단하에 수업내용을 전달할 수 있음.
- 교·강사 확진시 비대면수업(7일)으로 진행하며, 비대면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 휴강 신청 후 보강을 진행하여 수업결손을 방지하도록 함.
- 고사기간중 학생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대면고사에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비대면고사, 과제대체 등으로 학생의 성적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.